

유럽의 농업 정책 · 제도 동향 분석(4)¹⁾

- 프랑스 새로운 농업 · 식품법의 동향-

김태련*, 허 덕**

1. 법의 성립 배경 및 실시 상황

1.1. 법의 성립배경

(1) 배경

프랑스에서 「농업근대화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생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분야(우유, 산양유, 신선 과일 · 채소 분야)에서 농업 생산자와 구매자와의 판매 계약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판매계약을 하지 않아도 처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당연히 생산자와 구매자의 불평등한 역학관계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2017년 출범한 마크롱²⁾ 정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내걸었

1) 이 글은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 · 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 (欧州の農業政策 · 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를 중심으로 재구성, 보완 · 해설을 더하여 작성한 것이다.

* KREI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및 편집인

2) 에마뉼 마크롱 (Emmanuel Macron). 제25대 프랑스 대통령(2017.05~). 프랑스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G20에 속하는 정상들 중에서도 최연소이다. 제2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제2제국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취임했을 당시의 나이와 동갑이지만, 연수로 따지면 에마뉼 마크롱이 39년 4개월 19일로 40년 8개월인 나폴레옹 3세보다 어리다. 2017년 5월 8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66.06%의 득표율로 르 펜을 꺾고 당선되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 가운데서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의 자크 시라크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통틀어봐도 3번째로 높은 득표율이기도 하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마크롱을 사회당 우파, 더 나아가 중도주의자로 분류한다. 사회당 시절 당의 중도주의 탈바꿈을 지지했고 정치적 입장은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제3의 길’ 노선과 상당히 유사하다. 신생 정당 기반의 정치인이지만,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고,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향은 전형적인 엘리트 합리주의자이다. 하지만 경제부문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이며 자유경쟁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집권 당시 경제 장관으로서 이른바 ‘마크롱 법’을 통해 기업 규제를 풀고 노동 시간과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등 좌파 사회

다. 마크롱 정부는 소득 향상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서 부가가치가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 있는 농업인에게 적절하게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이후 선거 공약이었던 농업단체, 디스카운트 스토어 등 농업·식품 관계자가 참여한 ‘식량 전체회의(États généraux de l'alimentation)’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2018년 1월 31일에 신농업·식품법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2018년 5월에는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에서 제1차 심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0월 법안 수정을 거쳐 재심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월 1일에는 드디어 「프랑스 신농업·식품법³⁾(이하 Egalim법)」이 공포되었다.

법안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에는 프랑스의 식품 서플라이 체인에서 농가·생산자에 대한 압력이 크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매점포가 판매 기간 동안 소비자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광고해 주도록 하여 양적 판매를 촉진하는 등, 교환조건으로써 디스카운트에 합의하는 생산자가 존재한다.

특히 프랑스 소매업은 6개 대형 슈퍼마켓이 식품 유통의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이어서, 소매의 권한이 강하다. 쇠고기·돼지고기 부문에 이르러서는 50~70%를 1곳의 대형 가공업자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식품유통 시스템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어 생산 농가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생산자가 얻어야 할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관련 논의가 깊어진 것이 Egalim법 성립의 배경이다.

(2) EU 규정과의 관계

프랑스에서는 UTP(Unfair Trading Practices, 불공정 거래 규율)는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UTP 지령을 유럽 레벨에서 옹호해왔다. 또, 프랑스 생산자에 대한 보호는 EU 지침을 앞서가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인식하고 있다.

EU 지침에 의하면, 프랑스 국외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 또는 조직(까르푸(carrefour), 레클레르(E.Leclerc⁴⁾ 사 등)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의 중앙 구매조직

당 정권 성향과 정반대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면에서는 진보적(리버럴) 입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리버럴한 포지션이라 생각하면 된다. 외교면에서는 친유럽연합(EU)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3) 정식명칭은 「농업 및 식량분야에 있어서 상업관계의 균형 및 건강하고 지속하여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식량을 위한 법률(La loi n° 2018-93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이다.

4) E.Leclerc(공식적으로는 Leclerc,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리클레어(like)는 프랑스의 협력 사회이자 하이퍼마켓 체인으로, 아이브리어세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E.Leclerc는 1948년 1월 1일에 에두아르 레클레르에 의해 설립되었다. E.레클레르는 2012년 기준으로 현재 프랑스에 500여 곳, 국외에 114

(Centre d' Achat 등))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도 장점은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UTP 지침의 내용 중 일부는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적용되고 있었지만,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법이라도 새로운 지령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1.2. 법의 실시 상황

2019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농업장관은 Egalim법과 관련하여 농가 소득 시정 및 농약사용 삭감을 목적으로 ① 농약 판매 활동과 조연 체제 분리, ② 농업 협동조합 관리 강화, ③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대해 3가지 오르도난스(ordonnance, 위임 입법⁵⁾)를 설명하였다⁶⁾. 같은 날 이 같은 오르도난스가 제정되었다.

2019년 6월 5일 프랑스 상원(원로원) 경제위원회(Commission des Affaires économiques)에서 프랑스 신농업·식품법 시행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생산자 단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Egalim법은 식품 전체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농업」 이라기보다는 「식품」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논의에 있어서 폭넓은 여론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 확보와 품질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산지 및 생산비용에 대한 적절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컨셉(concept)은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인 유통업체의 수치를 기반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인 농가의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경쟁 논리를 역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Egalim 법의 작성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거듭하여 동의를 얻었지만, 법률의 시행 후에 반드시 유통업체가 규칙에 따라 비즈니스를 실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개 점포가 있다. 이 체인은 레클러크 브랜드로 반독립형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대형 하이퍼마켓에는 에스페이스 킨체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엔터테인먼트/멀티미디어 섹션이 있다. E.Leclerc는 프랑스, 일부 도시와 마을, 근교에서 수많은 상점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단지 외곽이나 하이퍼마켓과 쇼핑센터에 위치해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Leclerc>)

5) 프랑스 법제사상 국왕의 칙령 일반을 말하는데, 현재는 행정부가 그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리는 정령 중 통상적으로는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조치를 한정된 기간에 한해 정부가 발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제도에 의거한 것을 말한다. 콘세유 데 터의 의견을 들은 후에 각의에서 정해져 공시 후 즉시 효력이 생기나, 추인 법률안이 수권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날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된다(프랑스 헌법).(출처: ブリタニカ 國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

6) 2019年 4月 24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참조

2. 법의 구체적 내용

Egalim 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된다.

- ①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적절한 상업 관계: 적절한 가치 재분배로 생산자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 부당염가판매(덤핑 등) 금지
- ② 식품의 품질·지산지소(地產地消)⁷⁾: 상품의 위생환경 및 영양측면에서의 조건 개선 외에 농약 사용 삭감이나 식품 손실 대책도 포함
- ③ 동물복지 강화
- ④ 건강에 기여하고 신뢰성 및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품 촉진
- ⑤ 식품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감소

Egalim법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Egalim법의 구성

제1편	농업 및 식품 분야에서 상업 관계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제1조~제23조
제2편	건강, 고품질, 지속가능성 식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동물복지의 존중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제1장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24조~제66조
		제2장	동물 복지의 존중	제67조~제73조
		제3장	모든 사람의 지속 가능한 식품 접근성 강화	제74조~제92조
제3편	농업 분야의 단순화를 위한 조치			제93조~제95조
제4편	이행 규정 및 최종 규정			제96조~제98조

출처: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⁸⁾ 자료에서 みどり情報総研 작성 みどり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에서 인용.

이 중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적절한 상업관계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한 가격 형성을 목표로 매년 6월경에 발표되며, 제품 가격 및 마진 형성 관측소(OFPM, Observatoire de la formation des prix et des marges)의 가격을 참고하게 된다. 이에 관련 담당 기관은 농업단체나 가공·유통업계에 호소하여 생산비 및 가격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 품질·지산지소에 관해서는 2022년까지 단체 식당에서 식사의 50% 이상을 유기농, 친환경 상품 등을 사용하며, 전체의 20% 이상을 유기 농산물로 하고, 그 외

7)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함.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ko.dict.naver.com)

8)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 :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702D1C4C41DBFB79B23245B3C2C59A06.tplgfr31s_2?cidT exte=JORFTEXT000037547946&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37547943

2021년 7월 1일부터 푸드 로스(food loss⁹⁾) 삭감을 위해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백(take-out bag)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2.1.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의 적절한 상업 관계

(1) 관련 오르도난스(ordonnance)

2019년 4월 24일 각료회의에서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도 Egalim법에 따라 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 ② 대형 소매업체의 생산자 등 판매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대응(경쟁 제한적 관행 및 기타 금지 행위)을 제재하는 장관의 권한 강화에 관한 상법 개정을 포함한 2개의 오르도난스를 설명하였다. 또한 ②의 오르도난스에서는 ① 현저한 불균형, ② 일방적 우월적 지위, ③ 갑작스러운 상업 관계 단절에 대한 단순화 및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

또한 2019년 9월 25일 프랑스 하원의 ‘서플라이어(supplier)와의 상업적 관계에서 대규모 소매업자와 업계의 상황 및 관행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Egalim법 시행 후 6개월간 대형 소매업체와 서플라이어(농가, 식품가공산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Egalim법이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상업 관계 적정화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41개의 추가적인 제안을 하였다.

(2) 재판매 가격 수준(SPR)

프랑스에서는 1996년에 마진 10% 이상을 포함하는 재판매 가격 수준(최저보장가격: resale price support, 불어: SPR, Suppression de prix de revente)¹¹⁾을 도입하여

9) 식품 손실: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버려지는 식품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일본어사전, ja.dict.naver.com)

10)2019년 4월 24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11)프랑스에서 기존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내용 중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한다.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에 최소한 1유로에 판매됐다면, 2월 1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돼야 한다.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Egalim법에서는 1) 가격 결정 시스템의 전환과 2) 식품 프로모션 가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결정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생산자 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식품 프로모션 가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품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출처: KOTRA 해외시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량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의 기준 가격(구입가격)으로는 유통업체에게 있어 불가피한 비용(물류비, 인건비, 수송비 등)을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Egalim법에 의한 조치로 향후 2년간 시범적으로 해당 기준 가격을 10% 인상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Egalim법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부당염가판매 금지

Egalim법은 유통단계에서 저렴한 판매 경쟁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부당하게 저렴한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유실하거나 농산물의 적정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 간 수준의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의 할인 수준은 가격 기준으로 34%, 양 기준으로 25%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1개의 상품을 구입하면 1개의 동일 상품이 무료라는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대책은 2년간의 시행 기간을 두고 있으며, 부당 염가판매 억제를 위한 감시 장치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4) 참조 가능한 지표

① 지표의 작성

가격을 설정할 때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Egalim법이 성립되었다. 이 때, 생산비용의 지표가 되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그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 가능한 지표’가 존재한다. 이 지표는 정부에 의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면 CAP 등 EU 규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으로, 정부가 공식 지표를 제시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농산물에 관해 정부가 농가의 생산비용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이 기준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도 피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정부계 기관인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도 모든 농산물에 대한 기본 가격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다.

장 뉴스, ‘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법 제정’, 2019년 2월 28일 게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2883>

이에 각 부문의 업계전문조직(interprofession)이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나 가격을 각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각 부문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그 가격은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일 뿐 사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의무화를 한다면 경쟁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정가격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곡물 가격은 루앙항구의 시세를 기준으로 연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APCA)도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업회의소가 생산비용 등을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참조 가능한 지표는 업계전문조직(interprofession)이 만들어, 시장 가격과 생산비용(작성하지 않은 단체도 있음)을 발표한다. 지표는 지역마다 작성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가격이다.

참조 가능한 지표는 품목별(브로콜리, 샐러리 등)로 존재하고, 각 업계의 업계전문조직(interprofession)과 기술연구소가 부문별로 전형적인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수정을 하면서 평균적인 지표를 작성한다.

일부 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지표가 반영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가 지표를 거부하는 경우, 생산자는 조정관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증명서는 농가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사무작업이 3~4개월가량 소요된다. 매달 판매해야 하는 농산품을 보유한 농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아, 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② 지표의 종류

프랑스 농업·식량부가 업계전문조직이 제시하는 지표를 목록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표를 제시하면, 그 지표를 참조지표로서 준수할 것을 의무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농업·식량부는 어디까지나 경쟁시장의 경찰¹²⁾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의 종류와 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지표의 품목

원유¹³⁾, 쇠고기, 곡물, 야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된 것에 한하므로, 유기농법에 관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가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지표를 설정하기 곤란하다.

2019년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지표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표 설정에 있어서

12)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와 그 장애 제거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강제, 명령하는 행정 작용이나 그 조 직을 말함. (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13)처리가 되지 않은 착유 직후의 우유 상태를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가격 결정 방법, 유기농 제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④ 지표의 적용

서플라이 체인 상의 계약에 있어 금액에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라면 생산 비용 및 업계전문조직의 참조 지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 금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참고할 수도 있지만, 가격결정 방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 지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업계전문조직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상의 가격에 불복하고 가격이 크게 생산자에게 불공평한 등의 경우, 조정관(mediateur)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정관은 생산비용과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가격 공정성을 판단한다.

Egalim법 제정 이전에는 유통업체와 가공업체에서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이 법에서는 새롭게 생산자 측에서 계약가격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불복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불복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가격 설정 시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과 기능하고 있지 않는 부문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의 예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지표가 작동하는 부문과 작동하지 않는 부문

기능하고 있는 부문	우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쿼터 폐지 후, 계약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분석 실시 • Egalim법 제정 전부터 생산 비용과 마진을 고려한 지표 설정 • 우유 가공업체는 조합과 민간 기업이 반반이며, 민간의 불공정한 상거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는 점에서 지표를 받아들이기 쉬운 배경이 있음.
기능하고 있지 않은 부문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가공의 70%를 한 회사가 독점 • 지표를 거부할 경우, 조합 및 생산자 단체는 다른 가축을 처리할 곳이 없어 협상 난항 우려

출처: APCA 자료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지표가 기능하고 있는 부문으로 우유를 예로 들 수 있다. 낙농부문은 공익단체인 전국낙농경제센터(CNIEL)가 프랑스의 업계전문조직으로서 Egalim법 시행 전부터 지표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원유 외에도, 치즈, 버터, 분유에 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도 우유를 모델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부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Egalim법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중시되고 있는 것은 우유와 축산(쇠고기, 돼지고기)이다. 또는 채소·과일의 디스카운트(할인)도 많이 볼 수 있다(예: 사과 1유로/kg)는 점에서, 입안자에 의해 이 부문도 지표 적용에 대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지표 설정이 지금까지의 거래 형태와 맞지 않는 부문도 있다. 예를 들어, 곡물은 선물 시장·상품 시장에 근거한 계약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Egalim법에 정해진 방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현재에도 곡물부문에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표의 결정방법은 낙농부문의 경우, 먼저 CNIEL(프랑스 국립낙농협의회)이 낙농가들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프랑스의 축산연구소(Idel)에 조사 협조를 의뢰한다. Idel은 자신의 조사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낙농가의 회계 정보에서 원가를 고려하고, 농업 경영자가 최저 임금의 2배 금액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다. 그 후 CNIEL은 유럽위원회를 상대로 산출된 가격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표를 확정한다. 또,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평야, 산악, 유기농의 3가지 지표가 있으며, 각각 가격 추정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격과 같은 매크로 데이터 및 농가 비용(농지비용, 사료비용 등)에 대한 지표의 입수는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에서 개별 가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5) 조정관(Mediateur)의 역할

조정관(mediateur)은 복수의 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의 전문분야는 존재하지만, 부문마다 전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는 가공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관과 상담할 수 있다. 조정관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합의를 도모하도록 조정함으로써, Egalim법 규정 준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관 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문은 낙농부문이다. 원유는 월별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자간에 이견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2019년 프랑스 최대 유업체¹⁴⁾인 Lactalis사와 이 회사에 우유를 납품하는 15개의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UNELL은 가격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관에게 의뢰하여 타협점을 찾았다.

조정관에 의한 조정 프로세스의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14)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그림 1〉 조정관의 조정 과정

1. 신청접수	신청자의 정보 제공	신청 후 며칠 이내
2. 허용성 분석	자료 수집 신청자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신청의 허용성을 분석	신청 접수 확인 후 15일 이내
3. 지시	각 당사자와의 의견 교환, 보충 자료 수집	1개월 이내
4. 조정의 공식화	신청자의 최종 증거수령에 관한 정식 계약을 양 당사자에게 요청	
5. 조정관의 증개	조정관의 중재하에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당사자간의 협상 *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경우: 조정관이 파견되는 내부 조정	2개월 이내
6. 신청접수	중재 해결 또는 (합의가 있어야) 조정관 의견 권고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¹⁵⁾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6)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의 역할

생산자 마진 관측소(OFPM)는 2010년도에 농업·식량부에 의해 기본적인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용, 산업가격, 소비자가격, 유통비용 등과 같은 서플라이 체인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분석 결과는 매년 4월 또는 5월에 「가격에 관한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독자적인 분석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FPM이 참조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공적 기관이 지표를 제시하면 그것이 각 계약의 기반이 되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식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다.

OFPM은 공적 기관이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때문에, 유통업체 및 생산자 업계 단체에 대해 마진이나 비용에 따른 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15)프랑스 농업·식량부, “La médiation des relations commerciales agricoles de l’ amont agricole à l’ aval alimentaire” : file:///C:/Users/1730959/Downloads/190531_plaquette_mediateur%20(1).pdf

2.2. 식품의 품질 · 지산지소¹⁶⁾

Egalim법에서는 2022년 1월 1일까지 단체 식당에서 식사 50% 이상을 고품질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20% 이상의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단체 식당은 프랑스인 식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프랑스에는 약 8만 개의 단체 식당이 매년 30억 개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700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이 보육원, 학교, 대학, 보건시설, 사회·의료·사회시설, 교도소, 관공서 등의 단체 식당에서 적어도 한번은 식사를 하고 있다¹⁷⁾. 따라서 Egalim법 시행에 있어 단체 식당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전국의 단체 식당에서 실시하는 내용 및 일정은 다음 <표 3> 및 <그림 2>와 같다.

전국 공공단체식당평의회¹⁸⁾(CNRC)는 2022년 1월 1일까지 공공 단체 식당에서 식사의 50% 이상을 유기농, 환경을 배려한 상품을 사용하고, 전체의 20% 이상을 유기농산물로 조달하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전국 규모의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국립식품위원회(CNA)가 협의하며, 전국식품프로그램(PNA)에 있어서도 중요한 초점이 된다¹⁹⁾.

16)최근,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안심 지향의 고조나 생산자의 판매 다양화의 대처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지역생산 지역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인데,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려는 활동을 통해서 농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이것에 의해 소비자가 생산자와 「얼굴이 보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로 지역의 농산물·식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할 때까지의 거리는, 수송비용이나 신선도, 현지 농산물로서 어필하는 상품력, 아이가 농업이나 농산물에 친근감을 느끼는 교육력, 또 지역 내의 물질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또, 소비자와 산지의 물리적 거리의 짧음은, 양자의 심리적인 거리의 짧기도 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있어, 소비자의 「현지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이나 안심감이 깊어진다. “그것이 그 지방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농업을 응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황폐화와 재배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현지 농업을 활성화하고 그 나라의 식생활과 식문화가 지켜져 식량 자급률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거리가 짧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리에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수반하는 농산물의 왕래를 지산지소라고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분위기가 있어 온 활동으로, 교육이나 문화의 면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고정적,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유연성·다양성을 가진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것이 필요하다.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주된 대처로서는 직판장이나 할인점에서 현지농산물 판매, 학교급식, 복지시설, 관광시설, 외식·중식, 가공관계에서 현지농산물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農林水産省, 「地産地消推進検討会中間取りまとめ」, <http://www.jsapa.or.jp/chisan/What%20is%20isantishou/intro.html>)

17)2020년 2월 25일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18)어떤 일을 평의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말함.(출처: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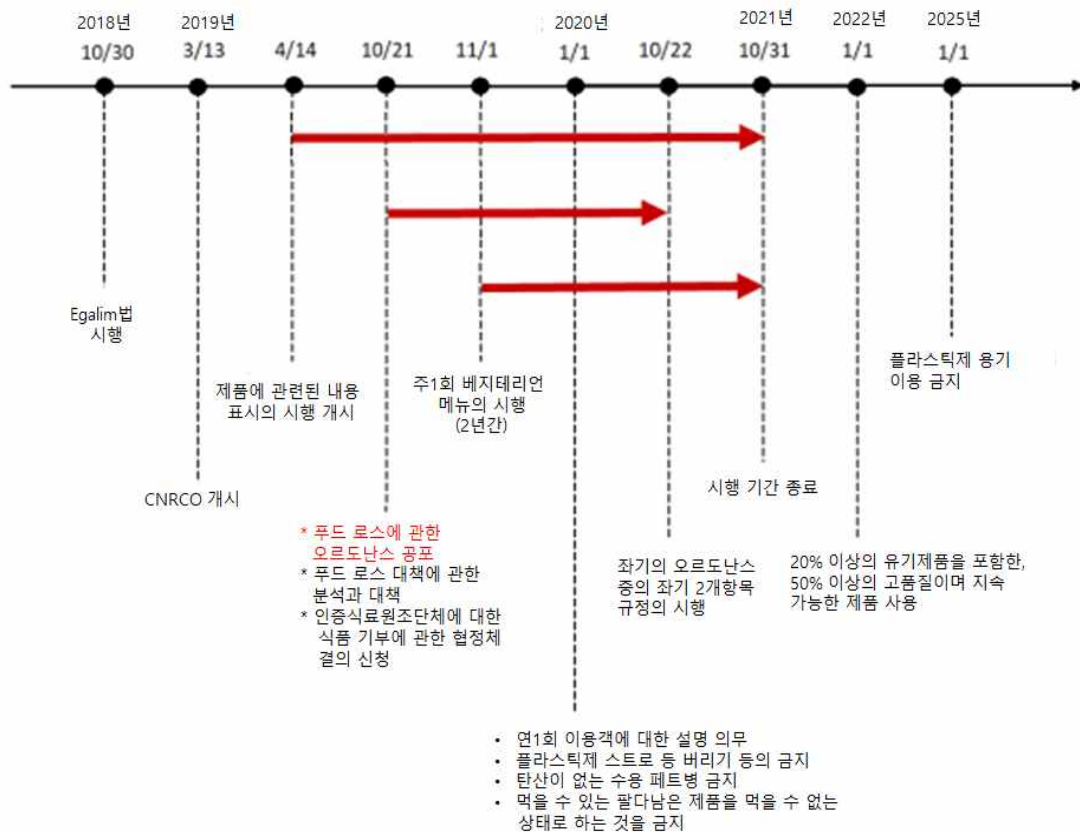
19)2019년 4월 25일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표 3> 식품의 품질·지산 지소 관련 단체 식당이 실시하는 내용

시책	기한	관계기관					
		공적 및 사 법인	6세 이하 대 상의 탁아시 설(보육원, 유아원, 일시 탁아보육단 등)	대 학 학식	공적기관(행정 기관, 공립병원, 군, 형무소, 행 정적 공시설법 인(EPA)의 식 당 등	CRPM* 제230 조 제5항에 언급이 있는 사법인(보건· 사회·병원시 설, 형무소 등)	CRPM* 제 230조 제5항 에 언급이 없는 사법인 (민간기업의 사원식당 등)
20% 이상의 유기 제품을 포함, 50% 이상의 고품 질이면서 지속가 능한 제품 사용	2022년 1월 1일						
연 1회 이용객에 대한 설명 의무	2020년 1월 1일						
제품에 관련된 내용 표시의 시 행	2019년 4월 14일~ 2021년 10월 31일	임의적 실시 (자발적인 지 역 당국을 대상)	임의적 실시 (자발적인 지 역 당국을 대상)		임의적 실시 (자발적인 지역 당국을 대상)		
영양성분 정보의 표시	2018년 10월 30일						
단백원 다양화를 위한 복수년 계 획	2018년 10월 30일	1일 200식 이상의 경우	1일 200식 이상의 경우	1일 200 식 이상 의 경우	1일 200식 이상 의 경우	1일 200식 이 상의 경우	
주 1회 배지테리 언 메뉴의 실행	2019년 11월 1일~ 2021년 11월 1일						
플라스틱 스트로 등의 버리기 금 지	2020년 1월 1일						
탄산이 없는 수 용 페트병 금지	2020년 1월 1일						
플라스틱제 용기 금지	2025년 1월 1일 (주민 2,000명 이 하의 지자체는 2028년 1월 1일)						
푸드 로스 대책 에 관한 분석과 대책	2020년 10월 22일						
먹을 수 있는 팔 다남은 상품을 먹지 못하는 상 태로 만드는 것 을 금지	2020년 1월 1일						
인증식료장려단 체에 대한 식품 의 기부에 관한 협정 체결 신청	2020년 10월 22일	1일 3,000식 이상의 경우	1일 3,000식 이상의 경우	1 일 3,000식 이상의 경우	1일 3,000식 이 상의 경우	1일 3,000식 이상의 경우	1일 3,000식 이상의 경우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
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그림 2> 식품의 품질·지산 지소 관련 단체 식당이 실시하는 일정



출처: 프랑스 농업·식품 사이트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2.3. 농약

(1) Egalim법까지의 흐름 및 동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2008년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농업을 유지하면서 2018년까지 화학 농약(식물 병충해 방제)의 사용을 5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에코파이토(Ecophyto) 계획²⁰⁾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는 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 2020년

²⁰⁾에코파이토 계획이란 식물 사용을 줄이고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다. 에코파이토 계획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농업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에서 식물성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1월 7일, 국가 Pflanzenschutz(식물 보호)제 감축 계획인 에코파이토 II+에 대한 전략지향 및 후속위원회(COS)가 개최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Pflanzenschutz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구 보호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전문성을 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살충제에 덜 의존하는 농업 및 살충제에 대한 조치, 글리포세이트 삭감 계획, 살충제 사용 축소(유럽 수준에서 설정된 조화 위험 지표) 등이 목적이다. 이 계획은 수 차례 통합 및 개정·강화되었다. Pflanzenschutzmittel(식물 보호를 위한 약제의 일종, 농약의 총칭으로도 사용된다. 파킨슨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용을 줄이는 것은 인간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까지 25%, 2025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코파이트 계획 II를 수립하여 대체 법의 연구와 이노베이션 강화하는 등 농약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galim법 또한 농약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이 법에서는 먼저 네오 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에 대해 사용금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데크레(décret, 행정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거와 인접한 지역 인근 및 주거와 인접한 오락 목적의 비거주 지역에서의 농약 사용은 생물적 방제 제품 및 저 리스크 물질로만 구성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하려면 하는 경우에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사용되는 살포 기술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건강 등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농약 사용자는 인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상의한 후 커미트먼트(commitment)의 현장에 해당 조치를 공식화한다. 해당 조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공중 보전을 위해 행정 당국은 농약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적용 조건은 데크레의 몫이다.

Egalim법은 원격조작 항공기에 의한 농약 살포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제82조). 이 실험은 농약 살포에 따른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2021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실험 결과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평가한다²¹⁾.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적 기대이다. Ecophyto II+ 계획은 정부가 약속한 바를 구체화하고, 2025년까지 Pflanzenschutzmittel 사용을 50% 줄이고 2020년 말까지 주요 용도 및 2022년까지 모든 용도에 대해 글리포세이트를 배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한다. 에코파이트 II+ 계획은 2018년 4월 25일 발표된 ‘필수제 및 살충제에 덜 의존하는 농업’ 조치와 2018년 6월 22일 발표된 ‘글리포세이트 배출 계획’의 조치들을 통합함으로써 이전 계획(Ecophyto II 계획)을 강화한다. 또한 Ecophyto II+ 계획은 “국가적 조치 계획을 채택하여 양적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농약 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치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Richtlinie 2009/128/EG의 유럽 의무에 부합한다. 농약 사용에 따른 위험 및 영향을 줄이고, 작물 및 대체 방법 또는 기술의 통합적 방어를 개발 및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표, 조치 및 일정살충제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물질들의 제거를 가속화하고, 글리포세이트 배출을 동반한다. 생물 통제 제품 및 자연 준비에 대한 우려 없는 인식과 배포를 촉진하는 것,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특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통신 및 대화를 통해 인구에 대한 살충제에 대한 노출 방지 및,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강화한다.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여 대안적 해결책과 Pflanzenschutzmittel 위험 및 영향에 대한 지식을 개발한다. DEPHY 장치를 통해 절약된 Pflanzenschutzmittel 시스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부들을 보조하는 전환, 기술 및 재정적으로 동반하여 농가 집단에게 Pflanzenschutzmittel 사용을 줄이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통합 농작물 보호 원칙의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Pflanzenschutzmittel 배포, 적용 및 자문 활동을 분리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실험 단계에 있었던 식물성약품 경제증서의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Glyphosate 사용에 대한 대안적 자원 센터를 제공하고, 사용, 위험 및 영향 감소에 대한 대안 및 레버에 대한 학습된 지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농부부터 대규모 유통까지 모든 참여자들을 동원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매년 710만 유로가 식물 제품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에코파이트 계획에 투입된다.(출처: 프랑스 농업·식량부 홈페이지 관련사이트, <https://agriculture.gouv.fr/le-plan-ecophyto-quest-ce-que-cest>)

21)2019년 6월 26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 Egalim법 제정 후의 움직임

농약의 사용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워킹 그룹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인가 부근에서 농약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비사용 존(구역), 살포기의 종류, 주민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 등을 언급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원, 병원, 양로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외에도 수원(水源)에 대한 배려 등도 포함되어 있다²²⁾.

2020년 1월 농약 사용에 관한 현장 작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더불어 도(道, département) 레벨의 농가 주민, 정치인 등이 대화를 실시하였다. 엘리자벳 보루누 환경연대 이행부 장관, 아네스 뷔쌍 연대·보건부 장관, 기욤 농업·식량부 장관 등 3개 부처 각료는 2019년 9월 9일~10월 1일까지 퍼블릭 컨설팅(consultation)을 마련하여 일반인에게도 농약 사용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현장 제정의 준비단계로서 정부는 ANSES에 의견을 구하고, 2019년 6월 14일에 발표된 의견서에서는 농약제품, 농작물, 분사기의 종류에 따라 가옥과 농지거리를 제시하였다.

ANSES는 위험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최소 10미터, 과수 등과 같이 키가 큰 작물은 10미터, 곡물 등의 키가 작은 작물은 5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옥과 농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각 도(道, département)당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²³⁾.

이후 주택 부근에서 농약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현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규정하는 데크레(décret) 및 아레테(arrêté, 행정명령²⁴⁾)가 2019년 12월 27일 제정되었다. 향후 정부는 2020년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학교, 보육원, 유치원, 요양 병원, 장애인 시설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부는 Labbé법²⁵⁾에 따라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거주 지역,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아파트와 캠프장, 호텔, 운동장 등에 대해 농약 사용을 철폐하겠다는

22)2019年 6月 28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3)2019年 9月 7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4)프랑스 법령체계를 보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오르도난스, **데크레, 아레테**, 훈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라 인정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크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하는 명령이고, 아레테는 집행기관(각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다.**(출처: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연구」 vol.12,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pp.199-229)

25)LOI n° 2014-110 du 6 février 2014 visant à mieux encadrer l’utilisation des produits phytosanitaires sur le territoire national가 정식명칭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큰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2009년에 계획이 시작된 이후 70% 감축하고 비농업용 농약 사용 감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금지 조치의 발효 일을 특정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 간 협의가 2020년의 1분기 중에 시작된다²⁶⁾.

(3) 지표의 설정

농약사용에 관한 동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매년 상반기에 계획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공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지표는 매년 하반기에 정리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데이터는 2020년 상반기 말부터 이용 가능하다.

지역별 판매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개 부처 장관은 ANSES 프랑스 국립농학·식량·환경연구소(INRAE²⁷⁾)와 프랑스 환경부 산하의 생물다양성국(OFB²⁸⁾)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명확하고도 강력한 해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평가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는 농약 감축 정책을 강화하는 계획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략정책 수립·진행·관리위원회(COS)에 대하여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4) 향후의 동향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²⁹⁾ 사용을 비화학적 대체농법(代替農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한다는

26)2020년 1월 20일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27)INRAE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agriculture, alimentation et environnement) : 2020년 1월 1일부터 국립농학연구소(INRA)와 국립환경·농업과학기술연구소(IRSTEA)가 합병하여 창설된 국립의 연구기관.

28)프랑스 환경부에 따르면, 생물다양성국(OFB) 설치를 규정한 법안이 승인돼 OFB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 공적기구로 2020년 1월 1일 출범하게 됐다. OFB는 현재 생물다양성청(ANB)과 수렵야생동물국(ONCFS)의 임무를 넘겨받아 생물다양성의 감시보전관리복원과 지속가능한 물을 균형 관리하게 된다. 기존 ONCFS는 야생동물과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렵허가 심사·발급, 환경과 수렵에 관한 감시 및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상호보조 전문성을 통합해 같은 전략 아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조직 간소화, 제반 정책의 조정과 강화, 각 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의 균형 있는 환경행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환경 위반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수사 권한도 강화된다. 법안 채택을 기회로 발끈 환경부 대신은 로와레현의 자연보호구에서 신생 OFB의 파트너가 되는 각 관계자와 회담한다.(출처: 環境展望臺-ニュース・イベント-海外ニュース, ‘フランス`生物多様性の保護強化のため生物多様性局を設立へ’, 2019년 7월 15일 게시, <https://tenbou.nies.go.jp/news/fnews/detail.php?i=27377>)

29)라운드업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계의 제초제이며, 특히 「라운드 업 맥스로드」라고 하는 이름의 제품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라운드 업 맥스로드의 성분은 글리포세이트 칼륨 염제 48% 함유하고 있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걸리면 효력을 발휘하고 그 식물을 뿌리까지 시들게 한다. 성분은 '비선택성'으로 분류되는데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어떤 식물이든 시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편리한 한편, 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에 뿌리면 작물도 시들게 할 위험이 있다. 그 때문에, 라운드 업을 작물이 나 있는 포장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는 없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접촉한 것을 모두 무차별적으로 말라 죽게 만든다는 효과 때문에 농경지가 아닌 곳에서 나는 잡초를 모두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U는 2017년 11월에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인가를 특정다수결에 의해 새로이 5년 갱신하였지만, 프랑스 등은 갱신에 반대하고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동월 프랑스 정부에 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ANSES가 승인한 제품의 수는 2018년 말 190건에서 2020년 29건으로 감소하였다. INRAE의 추정에 따르면, 와인 재배에서 기계에 의한 제초의 평균 추가비용은 약 250 유로/ha로, 이는 총 영업잉여³⁰⁾(Total Operating Surplus, EBE(total excédents d'exploitation)의 평균 7%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과 재배 형태에 따라 총 영업이익은 5~11.5% 사이에서 변동된다.

글리포세이트 제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다른 부문에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말까지 ANSES는 비화학적 대체농법 등이 경제적이고 실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며, 곧바로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나머지 29개 제품의 판매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해 매년 약 4억 유로(2020년부터 2억 5,000만 유로 증가)를 출연하고, 그 중 2억 유로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충당한다. 또한 고성능 농약 살포 장비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와인재배, 수목재배 및 채소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유로의 프로젝트 신청 접수가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Egalim법에 따라 생물적 방제방법의 효과적인 이용에 관한 국가전략에 대한 퍼블릭 컨설팅 및 5년에 2번씩 실시되는 권고 요건을 정하는 정령 안(모든 농업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에 대한 공청회가 2020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 해결방법을 유럽 레벨에 적용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³¹⁾.

하여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대체하는 대책이 확보되어 바로 늦어도 3년 이내에 금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글리포세이트의 「출구」에 관한 행동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농업자가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3년 이내에 주요한 사용을 종료하고, 5년 이내에 모든 사용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출처: FLIGHTS-AG, ‘라운드업とは?グリホサート系除草剤について’, <https://flights-ag.com/blog/herbicide/84/>)

30)생산에 있어서 기업 등 생산자의 생산활동 공헌분으로, 고용자 보수, 고정자본 감소, 생산·수입품에 부과되는 마이너스 세금, 보조금과 함께 부가가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이 중 혼합소득은 가계 중 개인 기업의 몫이며, 그 안에 업주 등의 노동 보수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영업잉여(가계에서는 자기 소유분)와는 구별된다. 영업 잉여·혼합 소득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정부 서비스 생산자 및 대 가계 민간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는 영업 잉여를 남지 않는다.(출처: 国民經濟計算用語集, 「Weblio 辞書」, <https://www.weblio.jp/content/>)

31)2020년 1월 7일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 관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

3.1. 농업 생산자와 거래 상대방의 적절한 상업 관계

(1) 농산물 판매 가격

농업 생산자의 소득 회복에 관한 오르도난스가 2019년 4월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효과는 현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도 가격에 관한 연차 협상이 Egalim법 제정 후 첫 계약이 되므로, 협상이 종료되는 해 봄 무렵에는 이 법의 영향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연례 협상은 2019년 9월에 시작되었지만, 9월~10월에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Egalim법의 규정에 의해 조정관에게 그 업무가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격 추세가 변화했다고 해도 그것이 Egalim법의 효과인지, 국제가격의 영향인지 또는 시장 동향의 변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농업은 다양한 요인(세계화, 날씨, 농작물 질병 등)의 영향을 받는다. 2018년과 2019년에 날씨가 양호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2020년 가격이 해당 법의 영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21년경으로 예상하는 관계자도 있다.

Egalim법의 효과에 대해 2019년 12월 시점에서는, 농가소득과 경영상황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업단체들은 이 법이 농가를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1월에 농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항의로 파리에서 대규모 농민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많은 농가는 농약 라운드 업(글리포세이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프랑스산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가 메르코수르(Mercosur³²) 등 외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32)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8,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TEC)를 부과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될 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메르코수르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

무역협정)를 맺으면 농산물의 대량 수입이 가능해져, 프랑스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원유 부문과 쇠고기 부문에서 좋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原乳)부문에서는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계약에 지표표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 가격 협상

프랑스에서는 가격 협상을 매년 9월경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1일에 종료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galim법의 영향은 2019년 9월에 시작된 가격 협상으로 빠르면 2020년 봄 무렵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비용은 우선 식품 가공업자에 반영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의 하류에 있는 유통·소매업 생산비용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가격 협상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는 동시 병행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협상은 3월 1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에 대한 협상으로, 가공 식품이나 프라이빗 브랜드는 제외된다.

- 1단계 : 생산자와 가공 업체 간 교섭(업계전문조직, 농업단체, 가공업체간 교섭)
- 2단계 :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간 교섭

Egalim법의 관점에서는 가격이 생산자 측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이다. 프랑스 농업경영자연맹(FNSEA)은 생산자를 존중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법의 목표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소매업계는 권한이 강하고, 수천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4개의 중앙구매조직(Centred'achat)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농업인은 경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불공정 상거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은 상관습·문화적으로 크게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당 염가판매(덤핑) 금지에 대한 대응

Egalim법에서는 취급 상품의 25%, 34% 이상의 할인을 금지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디스카운트를 주 판매 전략으로 삼아온 소매업체 중에는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며, 판로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지향하는 업체도 있다.

전체적으로 부당 염가판매(덤핑)의 임계값은 준수되고 있지만, 소매업자는 이 법

전이 없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 것이 전부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디스카운트 혜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예: 지금까지는 동일 상품을 2개 사면 1개가 무료(할인판매)였지만, 동일하지 않은 상품을 2개 사면 1개를 무료로 준다는가, 탄산이 들어간 미네랄워터 2병에 1개를 무료로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탄산이 들어간 생수와 무(無)탄산 미네랄워터 1병을 무료로 주는 것(끼워팔기)은 불법이 아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3> 부당 염가판매 규제에 대한 대형 소매점에서 볼 수 있는 해결(회피) 방법

Egalim 법 시행 후 덤핑 규제에 대해 대형 소매점에서 볼 수 있는 해결 방법



출처: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모든 식품이 디스카운트 제한의 대상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디스카운트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행정 당국도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명확하지만, 가격 협상의 열쇠는 아직 유통업체에 있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의 논리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부당 염가판매 금지가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프랑스의회 상원(원로원, 하원, 국민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회 위원회는 소매업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가가 설치한 기관이 조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설립한 OFPM은 가격 조사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서플라이 체인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관계자를 모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농업 회의소(ACPA, Chambre d' Agriculture³³)는 시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33)ACPA(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 Agriculture)는 프랑스 농업회의소 상설 의회이다.

(4) 소비자 가격

최근 소비자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0.3% 상승하였다. 그 중 신선식품은 1.5% 상승하였다. 이는 Egalim법의 효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부당 염가판매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galim법에 따라 부당 염가판매 임계값이 높아지고 할인판매가 제한됨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첫 승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만이 아니라, 물가지수에 비해 식품의 하락세가 컸지만, Egalim법에 의해 가격 하락이 멈추고 가격 파도가 해결되었다.

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소매가 이익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공업자도 일부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대상인 내셔널 브랜드(une marque nationale/une grande marque)와 주요 소매점 등에 의한 자체 프라이빗 브랜드(une marque de distributeur, MDD)에는 경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셔널 브랜드는 마진이 추가되어 가격도 상승하였지만, 내셔널 브랜드가 상승한 데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MDD는 소매유통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사 브랜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에게 가격을 낮추도록 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치즈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6% 상승하였지만, MDD 가격은 하락하였다.

기본적으로 여론은 물가 상승을 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지불가격에 Egalim법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셔널 브랜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MDD 가격은 하락하였기 때문에, 두 제품이 줄지어 있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알아채기 어렵다. 일부 소매업체는 Egalim법에 의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례로 든 식품이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5) 수입식품과 국산품의 경쟁력

Egalim법의 규정에 따라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지 청취조사에 따르면,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Egalim법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라고 관계자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로의 수입품도 Egalim법의 대상이지만, 수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수입 대상국이 Egalim법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에 관해, 수입품은 유통 단계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입국의 생산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농가의 소득이 낮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면 국산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소매가 저렴한 수입품에 크게 치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낮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가 수입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내용은 식품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Egalim법 시행 후에도 매장 진열제품의 80~90%는 프랑스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또는 품질의 관점에서든 당장 수입품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예측이 세워져 있지 않아 불투명하다. 식품 가공 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예: 제과점 제품의 버터 등)의 경우, 국산품은 고가이기 때문에 독일제나 네덜란드제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3.2. 식품의 품질 · 지산지소

Egalim법은 프랑스의 공공 단체 식당에서의 유기농업, 친환경적인 상품 등의 비율을 2022년 1월 1일까지 5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농업 · 식품부 장관은 EU의 일반적인 시장기구 규칙((EU)No1308/2013)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학교 스킴(school scheme)을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 스킴에 의하면,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을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또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³⁴)를 갖는 농산물일 것 등을 나타내는 품질에 대해 보조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산지의 식별마크(SIQuality and Original Signs of Quality and Orignity, SIQO³⁵)가 부여된 것에 대해 보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34)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약어 GI).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컫는다.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규정 외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35)품질과 출처의 공식 기호, SIQuality and Original Signs of Quality and Orignity.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공식 로고가 SIQO(Quality and Original Assignment)를 받은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원칙들은 • 생산자 그룹 또는 생산자 그룹으로부터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 • 국가에 의해 검증된 엄격한 생산 조건, • 국가로 공인된 독립 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등이며, 소비자에게 대한 공식적인 보증은 • 원산 보증(AOC 및 g.U. ; g.g.A.), • 고품질 보증(빨간색 라벨), • 전통 요리법 보장(GST) 보장, • 환경보전 보장(생물농업) 등이 있다.(출처: Institut National De L' Origine Et De Quanlite 홈페이지, <https://www.inao.gouv.fr/Les-signes-officiels-de-la-qualite-et-de-l-origine-SIQO>)

기존 EU의 CAP에서는 과일과 원유를 학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EU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었지만, 2016/2017년도부터 채소와 유제품을 보조대상에 추가하였다³⁶⁾.

2019년 7월 11일 유기농업전국협의회(CNAB)는 2018년 프랑스 오가닉(Organic, 유기) 농업분야에 대한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회를 통해 CNAB는 공공단체 식당에서 오가닉 농업 생산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2017년과 비교하여 27% 올랐으며, 이는 Egalim의 성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발표하였다³⁷⁾.

또한, 푸드 로스 감소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다음의 항목에 대한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공공단체 식당 및 식품산업은 푸드 로스를 줄이기 위해 식품을 기부
- 점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에 대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준비³⁸⁾

3.3. 푸드 로스 대책

프랑스에서는 2016년 2월 11일에 식품 폐기물 감소에 관한 법률³⁹⁾(이하 2016년 법 또는 갈로트(Garot⁴⁰⁾법)이 공포되었다⁴¹⁾. Garot법은 매장 면적이 400㎡를 넘는 대형 소매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사전에 계약한 시민단체에 기부하거나 비료 및 사료로 재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팔다 남은 식품은 노숙자가 먹지 않도록 물질을 뿌려 처리한 뒤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다. 반면 Garot법은 사업자가 식품을 폐기하는 것보다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틀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푸드 로스 대책의 주요 대상은 유통업자, 소비자, 공공단체 식당,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이다. 때문에 생산자는 주 타겟이 아니지만, 생산자단체도 푸드 로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FNSEA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⁴²⁾) ‘SOLAAL⁴³⁾’ 을 설립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시스템

36)2019年 7月 11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7)2019年 7月 11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8)2019年 7月 9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9)LOI n° 2016-138 du 11 février 201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alimentaire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036289&categorieLien=id>>

40)기욤 갈로트(Guillaume Garot, 1966년 5월 29일생)는 프랑스의 국회의원이다. 그는 마옌느(Mayenne, 프랑스 의회)를 대표하는 사회주의자, 급진주의자, 시토이엔 et diversity gauche의 일원이다. 기욤 갈로트는 2012년 프랑스 총선 이후 장마르크 아이라우트 정부에서 스테판 르폴의 권한으로 식품산업부 차관에 임명되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uillaume_Garot)

41)2016년법의 개요에 대해서는 岩波裕子(2019), 「フランス・イタリアの食品ロス削減法：2016年法の成果と課題」(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9pdf/20191001003s.pdf)을 참조하였다.

42)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한다. NPO는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진 말로, 이윤을

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10월 22일 Egalim법에 따라 푸드 로스 관한 오르도난스가 공포되었다. 이 오르도난스는 2016년 법의 규정을 단체식당 및 농업 관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오르도난스 공포로부터 1년 후인 2020년 10월 22일부터 하루 3,000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식당과 연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의 농업 관련 산업 사업자는 식량원조 단체에 대해 아직 먹을 수 있는 팔다 남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해당 분야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이후 식품폐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 약속 또는 의지)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 전국공공단체식당 협의회(CNRC)는 공공단체 식당에 공급 및 푸드 로스 대책에 의해 환경·에너지관리청(ADEM)이 주도하는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온라인 도구인 ‘Optigede⁴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실천적 도구와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⁵⁾.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NPO와 유사한 용어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다. 두 용어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NGO를 NPO에 속하는 하위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NGO는 NPO 중에서 인권·환경·여성·소비자운동과 정치개혁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NPO가 존재하고 성장하는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본다. 즉, 정부와 시장이 충분한 양의 특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분배하는 데 실패한 결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양한 NPO가 등장하고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 확대·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고 본다.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력기구라는 속성을 지닌 만큼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권력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민사회연구소장인 레스터 설러먼(Lester M. Salamon)은 NPO의 요건을 공식조직성,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율성(자치성), 자발성, 공익성으로 꼽는다. 즉, NPO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관리절차와 규정을 가진 조직의 성격을 정식으로 갖추어야 하고(공식조직성), 정부기구의 일부가 아닌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정부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사회에 의해서도 통치되지 않는다(비정부성). 또, 사업을 운영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구성원 사이에서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조직의 사회적 사명과 공익활동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비영리성), 자율에 의한 자기관리를 위해 유급 또는 무급,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부에 관리능력을 갖추고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자율성 또는 자치성). 그밖에 조직활동과 업무관리에 있어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자발성), 조직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해야 하는(공익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NPO는 단체의 활동성격에 따라 크게 서비스형 단체와 보이시형 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형 단체의 주요활동은 복지, 교육·연구, 예술 및 문화, 건강 및 보건, 상담 등의 유형·무형 서비스 제공이고, 보이시형 단체의 주요활동은 소외계층 권익옹호, 여성, 인권, 환경, 소비자 권리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과 정치개혁,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 계몽, 시민참여, 대안제시,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43) SOLAAL은 농업 및 식품 기부자와 식량 지원 협회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공익단체이다. 이 조직은 농업, 산업, 대량 유통, 농업 및 식품산업, 도매시장 등 많은 단체들을 포함한다. SOLAAL은 한 비전통적인 남자인 Jan-Michel Lemetayer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즉, 농업 및 식품 분야 기부자들과 식량 원조 단체들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SOLAAL의 역할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기존 것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는 • 농업 및 식품업계의 참여 강화, • 기금조성을 촉진, • 식품 지원자들의 영양 균형에 기여, • 쓰레기 방지 등이다.(출처: SOLAAL 홈페이지, <https://solaal.org/>)

44) Optigede 홈페이지: <https://www.optigede.ademe.fr/>

45) 2019年 10月 2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3.4. 농약

2019년 9월 12일 프랑스 환경연대이행부, 연대 보건부 및 농업식량부는 플러필라 디프론(Flupyradifurone)과 설펡사프롤(Sulfoxaflor) 두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⁴⁶) 살충제 사용을 2019년 말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주요 판매처인 Corteva AgriScience 사(미국)는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다” 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언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국가적 조치라고 반대 입장이다⁴⁷.

이들 2개 약제의 사용 금지를 위한 데쿠레(n 2019-1519)는 2019년 12월 31일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농가에서 농약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해당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농산품과 싸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많은 농가는 농약 라운드 업(글리포세이트)을 사용해왔으며, 정부의 금지로 프랑스산 농산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3.5. 낙농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9년 12월 현재로서는 Egalim법이 낙농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Egalim법에서는 생산자단체·조직이 매입 조건에 대해 가공업체와 협상을 할 때,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현실의 운용 간에는 괴리가 있어,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그 배경으로는 유통업체가 부당염가판매(덤핑)나 디스카운트 판매제한의 해결방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galim법에서는 유통업체에 대해 내셔널 브랜드에만 마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사의 프라이빗 브랜드(MDD)는 Egalim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46)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는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이다. 이 살충제는 1980년대에 셸 석유사(Shell oil company)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바이엘사(Bayer ag.)가 완료했다. 이는 대량 생산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살충제보다 독성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2013년 3월, American bird conservancy는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성분이 무척추동물과 조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2006년, 미국에서 30~90%의 꿀벌이 갑자기 폐죽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미국환경보호청이 양봉업자와 지속적농업자 연합에 농약의 벌에 대한 위험성 관련 정보 공개를 미룬 이유로 고소당했다.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를 원료로 한 농약인 이미다클로프리드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엘사는 이를 농약의 부적합한 처리 때문이며 농약의 성분엔 문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47)2019년 9월 13日付 IEG Policy 참조

MDD라도 실제 내용은 내셔널 브랜드와 동일한 가공업체의 제품인 경우도 있다. Egalim법은 계약화나 중재관 이용 등과 같은 좋은 영향도 있는 반면, MDD가 Egalim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서 유업체에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가공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상거래는 비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내용 공개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Egalim법 준수 사항이 개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Egalim법으로는 낙농부문에서 50%의 생산량 정도밖에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galim법의 대상은 프랑스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가공·판매되는 우유로 한정되어있다. 최종제품이 EU 국가 및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저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분유 등 외, 학교 급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생산자는 Egalim법이 모든 생산량을 커버하는 것을 원하지만, 가공업체는 가능한 적용 범위가 좁아지기를 바란다.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이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생산량을 커버하게 되면 프랑스의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생산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락탈리스 낙농경영협회(UNELL)와 프랑스 최대 유업체인 락탈리스(Lactalis) 사⁴⁸⁾는 Egalim법의 적정한 상업 관계 구축을 위해 생산비용을 원유가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⁴⁹⁾. 이 합의에는 9개의 생산자 조직에 속하는 약 4,000명의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 즉, 생산단계의 원가가 원유가격에 포함되는 움직임은 국내 최초였다.

생산비용은 원유의 수직적 산업조직인 전국 낙농경제업종(業種)위원회(CNIEL, Centr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l'Economie Laitière⁵⁰⁾)가 발표하는 가격 데이터 등을 참고로 연간 협상 전에 매년 리뷰를 한다.

48) 캐나다 농무성 산하 낙농정보센터(Canadian Dairy Information Centre)에서 발표한 2018년 우유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유업체 중 3위에 업체이다. 1위는 미국의 데어리 파머 오브 아메리카(Dairy Farmers of America) 사(29,00만 톤 우유 처리), 2위는 뉴질랜드의 폰테라(Fonterra) 사(2,300만 톤 우유 생산), 3위가 프랑스의 락탈리스(Lactalis) 사이다. 4위는 스위스의 네슬레(Nesle) 사이다.(출처: Farminsight-농장에서 식탁까지-팜히스토리-남인식의 소(牛)가사는 세상, '뉴질랜드에는 생산한 우유 95%를 수출하여 세계시장의 30%를 장악한 낙농조합이 있다', 2020년 7월 29일 게재,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4>)

49)2019년 9월 1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참조

50)Centr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l'Economie Laitière(끄니엘). 프랑스 국립 낙농위원회라고도 한다. 끄니엘은 크게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프랑스에서 낙농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되는 생산자와 유제품 관련업체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우유, 치즈, 요거트, 크림, 소에서 나오는 유제품, 프랑스가 원산지인 제품들에 한해 안전성, 위생을 위해 연구·홍보하는 업무를 한다.(출처: 네이버 블로그 TrendWatcher 빵요정, '08.cheese, CNIEL: 프랑스 국립낙농협의회, 끄니엘', 2016년 12월 26일 게시, <https://blog.naver.com/honeyjuny/220894998976>)

[부록]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Egalim법

프랑스 현지기업에 대해 Egalim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현지의 식품제조사(A사)는 Egalim법에 대한 기대와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식품 소매업이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의 권한이 강하다. 실제 A사도 식품가공업체로서 소매점에서의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Egalim법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Egalim법 시행 후 거래가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Egalim법으로 상거래가 개선된 것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는다” 고 말하였다.

또한 “원료조달에 관하여 Egalim방식보다도 20~30년 전부터 농가와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고 한다

푸드 로스 대책에 대해서는 “Egalim법 시행 전부터 인쇄 실수, 기한 미스(기간 경과 등)가 있는 식품을 자선단체인 FoodBank에 기부하였다. 또한 소매업계는 3년 전부터 자선 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고 한다.

A사는 식품제조업체 입장에서 Egalim법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공공 단체 식당에서는 현지 생산/유기농 식품의 20%, 주 1회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제공 등에 A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영업하고 있다. 현장의 공공단체 식당(학교, 병원 등)은 Egalim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적으며, 민간기업 측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표 4> 현지 기업 A사(식품 제조업)에 의한 Egalim법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

법의 목적·내용		실시 상황
농가·중소기업의 보호	• 상거래에 관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특히 대형 소매업체)	X (농민 시위를 전개)
	• 지산 지소 추진	△
	• 유기농 식품의 보급 촉진	△
지구 지키기	• 농약 사용 규제에 의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보호	X
	• 식당, 상점 등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
	• 푸드 로스 삭감	△
사람을 보호	• 모든 사람에게 안전·건강·영양·고품질 식품을 추진	△
	• 단체 공공식당에서 채식 추진	△

출처: 현지 청취 조사에서 みずほ情報総研 작성.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에서 인용.

4. 과제와 전망

4.1. 방법에 관한 과제

Egalim법에서는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판매가격을 결정, 계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galim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년 9월에 시작하여 2019년도 가격에 관한 연차 교섭 사이에 맞지 않는다. 이에 2019년 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연례 협상에서 Egalim법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문도 있어, 모든 농산물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생산자로의 환원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간 가공업체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생산자로의 이익 환원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Egalim법 제정 후 법 적용에서 제외된 MDD 상품을 늘려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은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농가에게 환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생산자단체 등은 시간이 지나면 Egalim법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유통업자에게 내리는 등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 Egalim법이 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 소매 및 판매계약에서 생산비용을 고려할 것
- 다양한 디스카운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

4.2. 향후 전망

2019년 10월 프랑스 하원(국회)과 상원(원로원)이 잇따라 Egalim법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Egalim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식량부에 대한 청취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현시점에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은 없으며, Egalim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2020년 10월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농업·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가공업체 대표 외에, 프랑스 경제부와 연계하여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인 유통업체 대표와도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Egalim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조직화하여 가격협상에서 더 강한 입장에 서는 것이 중요시되며, 국내 일부 생산자 단체는 통폐합 등으로 조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OFPM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마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 마진 분석 결과에 따라 Egalim법의 효과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galim법은 어디 까지나 틀(도구)이다. 정부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방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도구의 사용 여부 및 사용 방법은 각 관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참고문헌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La hiérarchie des normes et l’Etat de droit en France, 「공법학연구」 vol.12,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프랑스 농업·식량부, “La médiation des relations commerciales agricoles de l’ amont agricole à l’ aval alimentaire” : file:///C:/Users/1730959/Downloads/190531_plaquette_mediateur%20(1).pdf

Farminsight-농장에서 식탁까지—팜히스토리-남인식의 소(牛)가사는 세상, ‘뉴질랜드에는 생산한 우유 95%를 수출하여 세계시장의 30%를 장악한 낙농조합이 있다’, 2020년 7월 29일 게재,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6454>

KOTRA 해외시장 뉴스, ‘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법 제정’, 2019년 2월 28일 게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2883>

岩波裕子(2019), 「フランス・イタリアの食品ロス削減法：2016年法の成果と課題」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9pdf/20191001003s.pdf)

環境展望臺-ニュース・イベント-海外ニュース, ‘フランス、生物多様性の保護強化のため生物多様性局を設立へ’, 2019년 7월 15일 게시, <https://tenbou.nies.go.jp/news/fnews/detail.php?i=27377>

みずほ情報総研株式会社, ‘平成31年度海外農業・貿易投資環境調査分析委託事業(欧州の農業政策・制度の動向分析) 報告書(2020.03)

農林水産省, 「地産地消推進検討会中間取りまとめ」, <http://www.jsapa.or.jp/chisan/What%20isantishou/intro.html>

FLIGHTS-AG, ‘라운드업とは? グリホサート系除草剤について’, <https://flights-ag.com/blog/herbicide/84/>

2020年 2月 25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4月 24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4月 25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6月 26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6月 28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7月 9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7月 11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9月 7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9月 1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19年 9月 13日付 IEG Policy
2019年 10月 22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20年 1月 7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2020年 1月 20日付 フランス農業・食料省プレスリリース

LOI n° 2016-138 du 11 février 201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alimentaire (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036289&cat
egorieLien=id](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2036289&categorieLien=id))

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702D1C4C41DBFB79B2324
5B3C2C59A06.tplgfr3ls_2?cidTexte=JORFTEXT000037547946&dateTexte=&oldAction=re
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37547943](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702D1C4C41DBFB79B23245B3C2C59A06.tplgfr3ls_2?cidTexte=JORFTEXT000037547946&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37547943))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 블로그 TrendWatcher 빵요정, '08.cheese, CNIEL: 프랑스 국립낙농협의회, 꼬
니엘', 2016년 12월 26일 게시, <https://blog.naver.com/honeyjuny/220894998976>)

네이버사전, dict.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ko.dict.naver.com)

네이버 일본어사전, ja.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国民経済計算用語集, 「Weblio 辞書」, <https://www.weblio.jp/content/>)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https://kotobank.jp/word/>)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Leclerc>)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uillaume_Garot)

Institut National De L' Origine Et De Quanlite 홈페이지,
<https://www.inao.gouv.fr/Les-signes-officiels-de-la-qualite-et-de-l-origine-SIQO>)

Optigede 홈페이지: <https://www.optigede.ademe.fr/>

SOLAAL 홈페이지, <https://solaal.org/>

프랑스 농업·식량부 홈페이지 에코파이트 관련 페이지,

<https://agriculture.gouv.fr/le-plan-ecophyto-quest-ce-que-cest>